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이혼 등

원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

[redacted]

피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담당변호사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

[redacted]부터

[redacted]

[redacted]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

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.

4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6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
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5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6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